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761호 2020. 7. 29.(수)</p>	
---	---	---

선	기관의 장
결	

훈 령

제440호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3

고 시

제2020-88호 도로명주소 고시 8

공 고

제2020-1002호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제2020-1003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제2020-1007호 공시송달 공고 27

제2020-1008호 분묘개장공고(2차) 29

제2020-1009호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공고 32

제2020-1023호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3

제2020-1024호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1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서명생략

2020년 7월 29일

거창군 훈령 제440호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정원채정) ①~② (생 략)</p> <p>③ 행정과장은 정원채정 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근무내용, 채용필요성, 인원, 사무량,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u>기획감사실장</u>과 요구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p> <p>1.~4. (생 략)</p>	<p>제5조(정원채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행정과장은 정원채정 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근무내용, 채용필요성, 인원, 사무량,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u>기획예산담당관</u>과 요구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별표 1]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

(단위: 명)

소속 \ 직종	합계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소계	행정사무원	현장근로원	식당종사원	농기계수리원	
계	74	58	33	19	3	3	16
기획예산 담당관	2	2	2				
행 정 과	11	8	2	3	3		3
인구교육과	6	5	5				1
재 무 과	1	1	1				
복지정책과	2	2	2				
행복나눔과	1	1	1				
경제교통과	2	2	2				
문화관광과	4	1	1				3
산 립 과	2	1	1				1
환 경 과	1	1	1				
건 설 과	13	13	1	12			
의회사무과	2	2	2				
농 업 기술센터	8	8	5			3	
보 건 소	5	4	4				1
수 도 사 업 소	7	3		3			4
체육시설 사 업 소	2	1	1				1
거창사건 사 업 소	3	1	1				2
거 창 읍	1	1		1			
면	1	1	1				

전환 근로자 정원표

○ 본 청

(단위: 명)

직종 소속	합계	행정 사무원	현장 근로원	사례 관리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아동 복지교사
계	75(2)	35	3	11	8(2)	7	11
행 정 과	1	1	-	-	-	-	-
인구교육과	18(2)	3	-	-	8(2)	7	-
민원소통과	1	1	-	-	-	-	-
재 무 과	6	6	-	-	-	-	-
복지정책과	12	1	-	11	-	-	-
행복나눔과	12	1	-	-	-	-	11
안전총괄과	14	14	-	-	-	-	-
경제교통과	2	2	-	-	-	-	-
문화관광과	4	3	1	-	-	-	-
산 립 과	4	2	2	-	-	-	-
환 경 과	1	1	-	-	-	-	-

- 괄호속 인원은 시간제 청소년상담사 정원

○ 직속기관

직종 소속	합계	행정 보조원	현장 근로원	농기계 수리원	보건 의료요원	임상 병리사	영양사	식당 조리원
계	18	4	3	2	6	1	1	1
농 업 기술센터	9	4	3	2	-	-	-	-
보 건 소	9	-	-	-	6	1	1	1

거창군 공무원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계획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기관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필요로 공무원직근로자 1명 증원

2. 주요내용

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안 제5조제3항)

기획감사실 ⇒ 기획예산담당관

나.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증원(안 별표 1)

행복나눔과 행정사무원 1명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29.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세안길 78-36 등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822-7, 826-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세안길 78-36	20090401	20200729	임진왜란 때 세상이 편안하게 피난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490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원촌3길 109-10	20090401	20200729	사액서원인 포충사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부여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입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존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지방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할 근거가 없음에 따라 기존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를 지방세외수입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방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 신설(안 제1조·제3조제4항)
- 1) 지방세외수입 증대자에 대한 포상은 법령위임 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자치조례 목적조항 입안형식에 맞게 규정
 - 2) 지방세외수입 징수증대 포상 대상인 세외수입을 재산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으로 규정

나. 세외수입 징수증대 포상 지급기준을 기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과 함께 함(안 제4조제4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라. 전화)055-940-3254, 팩스)055-940-3219, 이메일)cyj00@korea.kr

붙 임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과 그 시행”을 “사항과 거창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세”를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로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을 “자”로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위원회”를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 중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재산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4항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

제7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방세”를 “군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u>사항과 그 시행</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u>사항과 거창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u>군세</u>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u>사람</u>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u>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u>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u>자</u>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u>사람</u>에게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포상금을 <u>지급한다</u>.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u>자</u>에게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포상금을 <u>지급할 수 있다</u>.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③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10조에 따른 <u>심의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u>사람</u>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10조에 따른 <u>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u>자</u>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신 설></p>	<p>④ <u>군수는 재산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 본문의 경우
 -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3항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⑤ 제1항~4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 본문의 경우
 -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3항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3조제4항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4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해당 지방세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

3. (생략)

③ (생략)

제10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인정
2.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④ (생략)

2. 법 제14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해당 군세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제3조제3항 약칭된대로 “군세”로 용어통일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인정
2.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제4조)
- 나.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함(안 제5조)
 - 1)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임범위에서 용도를 구체화함
 -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임범위에서 용도를 구체화함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함(안 제6조)
 - 1) 당연직 8명, 위촉직 4명 ⇒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
 - 2)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안전총괄과 ☎ 055-940-3632, FAX 055-940-36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4.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 055-940-3632, FAX 055-940-36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재난관리기금)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운용·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의무예치금액 등 모든 금액과 그 이자 등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이자 등을 제3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해야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2. 기금출납원 : 안전관리담당주사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4.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비용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 ④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안전총괄과장·건설과장과 재난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다.

거창군 공고 제 2020 - 1007호

공시송달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호선 거창 성기지구 주상교차로 개선공사, 20수용0139호」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보를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보를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7일

거 창 군 수

1. 사업명: 국도3호선 거창 성기지구 주상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공고기간 : 2020. 7. 29. ~ 2020. 8. 12.
4. 재결서 수령장소 :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5.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연락처	비고
1	미등기1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50-4번지(전) 424㎡ 소유자		
2	미등기2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산114번지(임) 60㎡ 소유자		
3	미등기3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122번지(임) 298㎡ 소유자		
4	백재운	미상		
5	신성재	미상		
6	신용범	미상		

6.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055-940-35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개장공고(2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상수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내지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내지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에 따라 분묘개장공고(2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개장처리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0. 7. 27.

거창군수

1.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최초공고일 : 2020. 5. 27.
2. 개장대상 분묘소재지 : 붙임 참조
3. 개장대상 : 유연분묘(단장139기, 합장9기)
4. 개장사유 :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 사업구간 내 편입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이장비 지급)

-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 6. 개장 후 안치장소 : 거창군, 김천시 소재 납골당 등
 - 가.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 나.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등
- ※ 추후 납골당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7. 신고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061-338-6153),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 8. 신고절차 : 소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분묘번호)를 확인 후, 매장된 분묘(망인)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등)를 구비하여 신고
-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써 같음합니다.

< 붙임 >

□ 개장대상 분묘 소재지

소재지	토지 지번
주상면 성기리	119,120,121,122,126,127,128,129,345,359,362,366,403,404,405,600,732,753,765,881,882, 119-4,120-1,121-1,125-1,126-1,127-1,130-1,131-1,133-4,209-3,209-5,209-7,211-10, 211-11,211-12,211-13,211-2,211-3,343-1,343-4,343-6,344-1,344-5,345-1,345-13,345-14, 345-2,345-5,345-7,347-10,347-11,347-12,347-13,350-7,351-18,351-19,351-24,351-25, 351-26,352-16,352-17,359-1,359-2,359-5,359-6,362-1,362-2,362-8,362-9,363-1,363-2, 363-3,363-4,366-1,371-6,388-3,391-5,402-1,406-1,407-4,600-1,600-11,600-12,600-13, 600-14,600-15,600-16,600-17,710-1,710-12,710-23,710-24,710-25,710-26,710-27, 710-28,710-29,732-1,734-1,734-2,734-20,753-2,753-8,753-9,755-10,755-9,764-2,766-2, 788-3,796-2,880-4,881-2,883-4,885-2,900-4,산192-1,산194-2,산194-3,산194-4,산205-1, 산206-1,산208,산209,산210-1
웅양면 죽림리	436,436,209-8,430-2,431-1,432-1,434-1,435-2,435-2,437-1,442-1,443-1,산139-10, 산139-5,산139-5,산139-7
웅양면 동호리	130,269,270,275,329,460,544,545,548,965,966,967,1068,1078,1084,1085,1170,1181,1200, 1201,1202,1243,1287,1290,950-15,1024-2,1036-1,1036-6,1036-7,1037-2,1039-3,1039-4, 1069-3,1077-2,1079-6,1083-5,1083-8,1085-1,1115-1,1127-2,1127-3,1128-15,1128-18, 1128-19,1128-21,1142-1,1146-1,1155-1,1156-1,1170-2,1170-3,1171-6,1171-7, 1171-8, 1184-8,1184-9,1185-1,1194-12,1196-13,1206-15,1206-16,1206-17,1206-18,1206-19,1206-20, 1206-21,1206-22,1243-2,1246-2,1255-1,1255-3,1255-4,1255-5,1255-6,1260-7,1260-8, 1261-1,1262-1,1265-1,1287-1,1288-1,1290-3,130-1,131-1,259-1,263-1,269-1,270-1,272-1, 273-1,274-1,276-1,276-5,276-9,329-1,330-1,459-1,460-1,461-1,464-10,464-11,464-12, 464-13,464-14,464-15,464-16,464-9,546-1,546-2,547-1,548-1,580-1,580-12,580-13,580-2, 580-3,606-15,606-18,606-19,606-20,606-21,944-4,945-1,945-10,945-11,945-12,945-13, 945-14,945-4,945-5,945-8,945-9,946-1,946-2,947-1,947-10,947-11,947-12,947-13,948-2, 950-12,950-13,950-14,950-16,950-17,950-5,961-2,962-4,964-3,964-4,965-1,965-3,965-4, 965-6,966-1,966-2,966-3,966-4,968-10,968-11,968-9,969-1,990-10,990-11,992-11,992-12, 992-13,992-14,992-15,993-14,993-15,993-16,993-17,993-18,993-19,993-4,996-8,997-20, 997-27,997-28,997-29,997-30,997-31,997-32,997-33,997-34,997-5,997-6,997-7,998-2, 998-3,998-4,998-5,998-8,998-9,999-1,산2-27,산2-31,산2-32,산2-33,산2-34,산2-35, 산92-7,산92-8
웅양면 산포리	386,390,392,393,1112,1116,1117,1215,1216,1217,1218,1219,1220,1221,1351,1368,1370, 1378,1379,1453,1463,1464,1465,1467,1468,1492,1535,1667,1671,1784,1801,1802,1803,1805, 1806,1809,1108-4,1110-3,1112-1,1113-1,1113-3,1113-4,1116-1,1117-1,1118-1,1215-1, 1242-1,1243-1,1246-1,1351-2,1366-1,1367-1,1368-1,1374-2,1374-3,1375-1,1377-2,1377-3, 1378-1,1380-1,1435-1,1436-1, 437-1, 438-1,1438-2,1440-3,1441-1,1442-1,1443-1, 1444-6,1446-2,1452-2,1452-3,1452-4,1453-1,1454-1,1462-3,1466-2,1466-3,1466-4,1467-1, 1468-1,1478-1,1480-1,1480-2,1480-3,1491-10,1491-6,1491-7,1491-8,1491-9,1493-10, 1493-11,1493-12,1493-13,1493-14,1493-3,1493-4,1493-8,1493-9,1531-1,1532-1,1532-2, 1533-1,1534-1,1536-1,1536-2,1536-3,1537-1,1537-2,1538-2,1538-3,1538-4,1539-6,1544-5, 1544-6,1591-2,1591-3,1652-1,1666-1,1667-2,1667-3,1668-1,1671-1,1777-1,1777-2,1778-3, 1778-4 1780-2,1782-1,1782-3,1783-3,1785-1,1786-6,1786-7,1793-3,1793-6,1793-7, 1794-2,1795-1,1797-1,1797-2,1798-2,1799-2,1800-1,1800-2,1801-1,1803-2,1803-3,1807-1, 1807-2,1807-3,1808-1,1808-2,1809-2,1809-3,1809-4,1809-5,1817-1,206-7,387-1,389-1, 390-1,390-2,391-3,394-12,394-13,394-14,394-3,394-6,394-7,394-8,394-9,395-1,산196-13, 산196-27,산196-28,산196-30,산200-1,산201-13,산201-7,산201-9,산202-3,산203-13, 산212-26,산212-27,산246-34,산246-36,산246-38,산246-40,산246-43,산246-46,산246-48, 산246-51,산247-2,산250-5,산251-3,산253-1,산254-1,산255-1

거창군 공고 제 2020 - 1009호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거창군 3차, 20수용0802호」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27일

거 창 군 수

1. 사업명: 함양 ~ 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거창군3차, 20수용0802호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7. 29. ~ 2020. 8. 12.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055-940-355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산98-6번지(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산98-6번지(임) 창고 등 28건 / 개별통지
7.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길 75-8, 양*상
8. 이해관계인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35, 남거창농업협동조합(신원지점)
9. 열람공고기간 이후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위임 범위 등에 맞게 개선·보완
- 나. 거창군 소재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용 법령 변경(안 제1조)
 -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비(안 제6조)
 - 1) 위원회 기능 대행 변경: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 ⇒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2)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에서만 통합·운영 가능
- 다. 용어 순화 및 정비(전 조문)
 - 1) 이차보전, 용자 ⇒ 이차지원(안 제1조의2, 제9조~제15조)
 - 2) 증빙 ⇒ 증명, 소요되는 ⇒ 필요한

라. 이자지원을 위한 용자 기준 등 규칙으로 규정(안 제13조~제15조)

마.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등 삭제(안 제7조·제17조·제18조)

1) 회계, 결산 및 보고 등, 시행규칙

2) 근거 :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0. 7. 29. ~ 2020. 8. 1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 주소 : (50132)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55-940-3363

- FAX : 055-940-3679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군내에”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거창군”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이자지원”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 이차지원 재원

제5조제3항 중 “증빙”을 “증명”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이자지원을 한다.

제9조 조 제목 “(용자대상업체)”를 “(이자지원 업체)”로 하고 같은 조 중 “제8조의 용자지원”을 “이자지원”으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용자금의 용도)”를 “(이자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금”을 “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하 “용자”라 한다)을 받는 업체에 대하여 이자지원을 한다.

제11조 조 제목 “(용자계획의 공고 등)”을 “(이자지원계획의 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용자”를 “이자지원”으로 한다.

제12조 조 제목 “(용자금의 대출)”을 “(금융기관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금을 지원”을 “이자지원을”로 “용자금을”을 “용자를”로 “용자 자금”을 “용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용자금의 대출절차”를 “이자지원 절차”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이자지원을 위한 용자조건) 이자지원을 위한 용자 기간 및 한도액 등 용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조 제목 “(용자금의 금리 등)”을 “(이자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 제2항) 중 “용자업체”를 “이자지원 대상업체”로 “이차보전금”을

“이자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 제3항) 중 “제2항의 이차보전금”을 “이자지원금”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이자지원 중단) 군수는 이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용자금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용자금 상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6조 중 “용자를”을 “이자지원을”로 한다.

제17조·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심의안건부터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중소기업기본법</u>」(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u>지방자치법</u>」 제142조 및 「<u>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u>」 제43조에 따라 <u>군내에</u>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142조 및 「<u>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62조의17에 따라 <u>거창군에</u>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u>제1조의2(정의)</u> 이 조례에서 “이자지원”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u>일부</u>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u>군수</u>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u>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u> 재원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p>	<p>1. <u>중소기업 이차지원</u> 재원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생략) ③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u>증빙</u>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u>증명</u>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p>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단, 위원회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 기금의 경리절차는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은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제9조(융자대상업체) 제8조의 융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 주사가 된다.

<삭 제>

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이차지원을 한다.

제9조(이자지원 업체) 이차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0조(이자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는 업체에 대하여 이차지원을 한다.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 현대화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용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초에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용자 신청 및 대상 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용자금의 대출) ① 군수가 자금을 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용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 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용자자금을 대출한다.

②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용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군수가 고시한다.

제13조(용자조건) ① 용자금의 용자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용자금의 업체당 용자한도액은 총액 3억원의 범위에서 개별업체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제1항의 용도에 따라 용자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용자금의 금리 등)

① 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

3. 시설 현대화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자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자지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초에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자지원 신청 및 대상 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금융기관 선정) ① 군수가 이자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용자를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 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용자금을 대출한다.

②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이자지원 절차는 매년 군수가 고시한다.

제13조(이자지원을 위한 용자조건) 이자지원을 위한 용자 기간 및 한도액 등 용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이자율 등)

<삭 제>

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용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4퍼센트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차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용자금의 상환)

① 용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매년 그 해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용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용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용자금 상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용자금의 대출원리금 회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다.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용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용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 및 용자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 및 용자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① 군수는 이자지원 대상업체에 대하여 연리 4퍼센트 범위에서 이자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지원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이자지원 중단)

<삭 제>

군수는 이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용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용어 순화(‘가정’의 조건절에서 ~한 때⇒~르/을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용자금 상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삭 제>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이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한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25.] [법률 제17111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6. 3. 29.]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0. 6. 1] [법률 제1681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제목개정 2011. 7. 25.]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0. 4. 30] [대통령령 제30653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29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재정차관자금"이란 정부가 차용인이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거창군수

1. 개정이유

이자지원을 위한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상향하여 군내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이바지하고,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규칙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자지원을 위한 융자한도액 상향(안 제10조제2항, 현행 별표 삭제)

- 1) 현행: 별표에 따른 업체규모별로 융자한도액 정함. 최대 3억
- 2) 업체당 각 융자금을 합한 총액의 6억원 이내

나. 용어 정비 및 순화(전 조문)

- 1) 융자, 이자차액보전 ⇒ 이자지원
- 2) 의하여 ⇒ 따라, 단 ⇒ 다만, 소요되는 ⇒ 필요한, 범위안 ⇒ 범위 등

3.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0. 7. 29. ~ 2020. 8. 18.(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 주소 : (50132)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55-940-3363

- FAX : 055-940-3679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칙명 :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 제목 “(용자대상업체)”를 “(이자지원 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용자대상”을 “이자지원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용자대상”을 “이자지원 대상”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자금”을 “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나목,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가목·나목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출촉진자금: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수출증대를 위해 필요한 자금

제4조 조 제목 “(용자계획의 공고)”를 “(이자지원계획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용자계획”을 “이자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출절차”를 “이자지원 절차”로 한다.

제5조 조 제목 “(용자신청 절차)”를 “(이자지원신청 절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용자금을 지원받고자”를 “이자지원을 받고자”로 “구비하여”를 “갖추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군수가 용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를 “군수는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용자절차
3. 이차지원 절차

6. 용자금 회수의무

제10조 조 제목 “(용자조건)”을 “(이자지원을 위하여 용자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용자기간은”을 “용자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업체당 용자한도액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자금을 합한 총액이 6억원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용자에 대한 용자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조 제목 “(이차보전 비율)”을 “(이자율)”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비율”을 “이자지원금을 지원할 때 이자율”로 한다.

제12조 조 제목 “(이차보전 절차)”를 “(이자지원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이자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달 1월”을 “달 30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자대상업체) ① 조례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u>용자대상</u> 업체는 제조업, 공예품 및 화강석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p> <p>1.~9. (생략)</p> <p>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u>용자대상</u>에서 제외한다.</p> <p>1. 조례에 <u>의하여</u> 용자금을 대출받아 상황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단,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체규모별 용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u>범위 안에서</u> 지원 가능</p> <p>2.~4. (생략)</p> <p>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조례 제10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u>자금</u>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기술개발자금</p> <p>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 개발에 <u>소요되는</u> 자금</p> <p>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u>소요되는</u>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u>소요되는</u> 자금</p> <p>2. 시설현대화 자금</p> <p>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u>소요되는</u> 자금</p> <p>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u>소요되는</u> 자금</p> <p>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p>	<p>제2조(이자지원 업체) ① 조례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u>이자지원 대상</u> 업체는 제조업, 공예품 및 화강석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p> <p>1.~9. (생략)</p> <p>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u>이자지원 대상</u>에서 제외한다.</p> <p>1. 조례에 <u>따라</u> 용자금을 대출받아 상황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u>다만</u>,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체규모별 용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u>범위에서</u> 지원 가능</p> <p>2.~4.(생략)</p> <p>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조례 제10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u>용자</u>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기술개발자금</p> <p>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 개발에 <u>필요한</u> 자금</p> <p>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u>필요한</u>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u>필요한</u> 자금</p> <p>2. 시설현대화자금</p> <p>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u>필요한</u> 자금</p> <p>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u>필요한</u> 자금</p> <p>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p>

- 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역특화산업 육성자금
 가. 농산물가공업체 등에서 지역특화 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나. 생물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4. 수출촉진자금
 가.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수출증대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9조(협약체결) ①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보전 절차
 4. 부담행위의 금지
 5. 보고의무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0조(융자조건) ① 조례 제13조에

- 스 구축에 필요한 자금
3. 지역특화산업 육성자금
 가. 농산물가공업체 등에서 지역특화 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
 나. 생물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
4. 수출촉진자금: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수출증대를 위해 필요한 자금
 ▷용어순화, 조문체계 정비

제4조(이자지원계획의 공고)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현행과 같음)
 6. 이자지원 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자지원신청 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9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지원 절차
 4. 부담행위의 금지
 5. 보고의무
 6. 융자금 회수의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이자지원을 위한 융자조건)

따른 용자금의 용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이동

1.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영안정자금 :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2.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② 용자금의 업체당 용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조례 제13조제3항에서 이동기술

제11조(이차보전 비율)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비율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용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절차) ① 취급 금융기관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이내에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용자금의 용자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영안정자금: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2.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② 업체당 용자한도액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자금을 합한 총액이 6억원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용자에 대한 용자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이자율)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이자지원금을 지원할 때 이자율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용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자지원 절차) ① 취급 금융기관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이내에 이자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30일 이내에 이차지원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삭 제>

자금용도별 · 업체규모별 용자한도액(제10조 관련)

업체규모별 자금용도별	상시 종업원수 20명 이하 또는 자본금과 매출액 중 하나가 3억원 미만	상시 종업원수 21명 이상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과 매출액 중 하나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상시 종업원수 101명 이상 또는 자본금과 매출액 중 하나가 10억원 이상
경영안정자금	1억원	2억원	3억원
기술개발자금	1억원	2억원	3억원
시설현대화자금	1억원	2억원	3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자금	1억원	2억원	3억원
수출촉진자금	1억원	2억원	3억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의견18-0025 중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